

사회적 부패방지를 위한 머그샷 제도와 대중 매체에서 인격권 보호

The Mugshot System to prevent Social Corruption and Protection of Personality Rights in the Mass Media

이 부 하(Lee, Boo Ha)*

ABSTRACT

The mugshot system is a system in which photos of arrested suspects are taken and disclosed. In the U.S., the mugshot system often made a decision to disclose mugshot through the public figure theory and an expanded interpretation of the public interest. The U.S. Supreme Court has opted for access to mugshot photographs in several cases and has taken a stand for privacy. Regarding the disclosure of mugshot,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he disclosure of mugshot is possible through a sentence between the individual's privacy rights and the public interests for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 but the U.S. Supreme Court omits this process.

The U.S. Supreme Court has been criticized for overprotecting the inaccurate mass media reports regarding the mugshot disclosure. In the case of U.S. courts, whether or not the mugshot is released is determined by whether the information is newsworthy.

According to Korean law, if certain requirements are met, information on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the face, name, and age of a suspect in a specific violent crime case can be disclosed. In general, a picture for identification of the suspect is taken, but the picture is not disclosed. The police are going to promote mugshot in accordance with the disclosure regulations such as the face of the suspect stipulated in Article 8-2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pecific violent crimes」. However, if the suspect's mug shot is disclosed due to the “crime of publicizing the suspect” in Article 126 of the 「Criminal Act」 in Korea, the person is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Therefore, it is difficult for the prosecutor, the police, or other persons who perform duties related to criminal investigation, or those who supervise or assist them, to disclose the identity of the suspect before requesting a trial.

Key words: Mugshot, Personality Rights, Public Figure, Freedom of the Press, Newsworthy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I. 서론

구속된 피의자의 얼굴 촬영과 그 사진을 언론매체에 공개하는 ‘머그샷’(mugshot) 제도는 방송·신문 등에 방영·게재된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하며, 일반 대중은 그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게 되어 법적 문제를 불러일으킨다.¹⁾ 이러한 머그샷 공개는 사진의 실제 인물의 신상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격권 침해로 유발하게 된다.²⁾ 만약 그 피의자가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더욱 피의자의 기본권 침해 정도는 막대하게 된다. 설사 그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재사회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³⁾ 머그샷 공개는 한편으로 언론의 자유 보장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과, 다른 한편으로 머그샷 촬영·공개된 피의자의 인격권 침해라는 측면이 있다.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되는바, 이 때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외부적 가치평가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주관적·내면적인 명예감정은 법적으로 보호 받는 명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⁵⁾ 즉, 일반적 인격권에는 인격에 전속하는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 등이 포함된다.⁶⁾

우리나라에서는 구속된 피의자의 머그샷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다. 1997년 탈옥해 약 2년 6개월간 도주했던 신창원이 현상 수배를 받으며 머그샷 사진이 대중에 공개되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1919년 만세 운동으로 투옥된 유관순 열사에게 일제가 만들었던 ‘감시 대상 인물카드’도 일종의 머그샷이라 할 수 있다. 2019년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인 이춘재의 머그샷도 유명하다. 미국에서는 흉악범죄뿐 아니라 폭행 등 가벼운 범죄를 저질러도 머그샷을 공개한다. 연예인이나 유명인들도 이 머그샷 공개를 피해갈 수 없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22살 때인 1977년 미국 뉴멕시코에서 무면허 상태로 과속운전을 하여 체포되었고, 이 때 머그샷을 촬영했다. 영화배우 휴 그랜트는 성매매 혐의로, 로버트다우니 주니어는 마약 혐의로 머그샷을 찍었다.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가수 저스틴 비버는 자신의 머그샷을 직접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했다. 미국 프로 축구선수인 잉글랜드 출신의 웨인 루니는 2019년 음주 소란으로 체포되어 머그샷의 주인공이 되었다.⁷⁾

1) Sebastian Bergau, Die Vermeidung von Persönlichkeitsrechtsverletzungen bei Spielfilmen über reale Geschehnisse, ZUM 2016, S. 812 (814).

2) 배성호, “민법에 있어 인격권 보호 서설 - 인격권 개념의 정립과 전개 -”, 한국부패학회보 제13권 제3호, 2008. 9, 143면 이하; 박규환,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허용범위 확정에 관한 기본권 이론적 연구 - 인격권(명예훼손)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제34집 4권 2호, 2006. 6, 149면 이하.

3) 이부하, “방송매체에서 인격권 침해에 대한 헌법적 보호”, 홍익법학 제19권 제3호, 2018. 9, 145면.

4) 조재현, “표현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고찰”, 공법학연구 제20권 제4호, 2019. 11, 132면.

5) 헌재 2005. 10. 27. 2002헌마425, 판례집 17-2, 311, 319-320; 헌재 2010. 11. 25. 2009헌마147, 판례집 22-2하, 480, 487.

6) 이부하, “일반적 인격권의 헌법적 보장”, 공법학연구 제17권 제2호, 2016. 5, 138면.

‘머그샷’ 제도는 대중매체뿐만 아니라 온라인에 배포·전파되면서 인격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다. 한번 공개된 사람의 얼굴 사진은 그 사람을 평생 따라다니며 괴롭힌다. 2020년 초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머그샷 공개 금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미국은 주(州)법마다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머그샷을 포함한 ‘체포 정보’ 공개가 원칙이다. 머그샷은 범죄자가 잠적했을 경우, 그 범죄자를 체포하는데 도움이 되고 대중에게 “위험인물이 당신 주변에 있다.”는 주의적 알람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구속된 피의자 얼굴 사진을 촬영하여 공개하는 제도인 ‘머그샷’(mugshot) 제도 도입이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경찰청은 2019년 말 행정안전부에서 신분증 사진 등을 통해 신상공개가 결정된 강력범죄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사진, 폐쇄회로(CCTV) 속 장면을 활용해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다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 법무부는 피의자 동의를 전제로 한 신상 공개는 적법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머그샷 공개 자체는 가능하나, 피의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한 것이다.

‘머그샷’ 제도에 의한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해 찬반 논란이 뜨겁다. 한 쪽에서는 범죄자 인권 보호를 위해 머그샷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공익 차원에서 머그샷 제도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최근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기로 했는데, 피의자가 긴 머리로 얼굴을 가려 피의자 신원 공개 제도를 무력하게 한 사례가 있었다. 피의자 신원 공개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머그샷’을 찍어 공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머그샷 제도의 법적인 도입은 사회적 부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언론매체는 공인이나 파급효가 있는 사건 당사자의 머그샷 공개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도 한다. 기자들의 머그샷 공개와 관련하여 당사자와 기자 간의 사회적 부패의 연결고리가 생길 수 있다. 이하에서는 머그샷 제도를 법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II. 사회적 부패방지와 머그샷 제도

1. 머그샷의 개념

커피 잔처럼 손잡이가 있는 큰 컵을 의미하는 ‘머그’(mug)와 ‘사진 촬영’(shot)을 합성한 용어가 ‘머그샷’(mugshot)이다. ‘머그’는 ‘얼굴’(face)의 속어이다. 구속된 피의자의 사진 공개 제도인 머그샷(Mug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은 얼굴의 속어인 머그(mug)와 사

7) <https://news.joins.com/article/23578884>

진 촬영(shot)을 합성한 용어다. ‘머그샷(mug shot)은 구속된 피의자를 식별하기 위해 경찰이 촬영하는 사진을 가리키는 ‘폴리스 포토그래프(Police Photograph)의 은어이다.

2. 머그샷의 유래

머그(mug)는 17세기부터 사용된 얼굴의 은어다. 얼굴을 뜻하는 명사 또는 ‘얼굴을 찡그리다’라는 동사로 쓰였다. 머그(mug)는 음료수 용기를 뜻하는 스칸디나비아어 단어 ‘mugg’에서 유래했다. 17~18세기에 머그잔을 만화에서 희화화된 사람 얼굴로 표현하는 것이 유행했는데, 그 때부터 머그가 ‘추한 얼굴’의 동의어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19세기 미국의 탐정 앨런 핑커턴(Allan J. Pinkerton)이 현상수배를 위해 도입했다고 한다. 머그잔에 얼굴 모양의 부조를 장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머그샷이 일반화된 이후에 다시 머그잔 디자인에 영향을 주어, 당시 머그컵 겉면에 머그샷을 인쇄해서 장식하는 일이 많았다.⁸⁾

‘머그샷’이라는 용어는 ‘찡그린 얼굴’이란 의미에서 파생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경찰에 구금된 피의자는 사진을 찍을 때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아보지 못하게끔 얼굴 형태나 용모를 달리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얼굴을 찡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유래한 것이다. 머그(mug)는 “누군가를 공격해 돈을 강탈하다”라는 ‘강도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로도 사용된다. 명사로는 대개 머깅(mugging)으로 사용한다. 이 역시 폭행·강도 범죄의 범인을 ‘추악한 얼굴의 범죄자’, 즉 머그(mug)로 지칭하면서 파생된 의미이다.⁹⁾ 현재도 머그는 잘 생기지 않은 얼굴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다. ‘머그샷’이란 이름, 생년월일, 체중 등이 적힌 판을 들고 키 측정자 옆에서 촬영하는 식별용 얼굴 사진을 말한다. 얼굴 전면과 측면 사진을 촬영한다. ‘머그샷’은 구속된 피의자의 사진을 보관하기 위해 찍어두는 초상 사진을 일컫는 폴리스 포토그래프(police photograph)의 속어다.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피의자가 구치소에 수감되면 피의자의 얼굴 사진을 촬영하는 절차를 거친다.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신체검사와 건강검진을 받은 뒤 수의로 갈아입고 ‘머그샷’을 촬영한다.

3. 사회적 부패방지와 머그샷 제도

‘부패’란 일정한 지역, 조직 및 국가를 중심으로 공무원, 정치인, 기업인 등과 시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국가체제의 마비와 사회환경의 유인효과를 유발하는 행정현상이고, 사회적 기

8) <https://namu.wiki/w/%EB%A8%B8%EA%B7%B8%EC%83%B7>

9) https://en.wikipedia.org/wiki/Mug_shot

대가능성을 위반한 불법적이고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일탈행위라고 정의된다.¹⁰⁾

언론매체에 의한 부정확하고 무책임한 머그샷 공개로 인해 공인이나 피의자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한다. 이는 문화현상으로서의 부패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부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반부패기구나 감사기관의 비효율적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매체 자체를 지배하는 문화로 인한 부작용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언론매체 자체의 문화가 유발하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후 법적 통제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언론매체 자체의 자율규제가 작동하여야 한다.

언론매체의 경우에 문화현상으로서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언론·방송에 대한 자정을 위한 독립된 자율적 감독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언론의 공정성을 위한 자율규제는 국가기관에 의한 자율규제 형식이 아닌,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입법할 필요성이 있다. 이 경우 국가는 언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율규제기구의 민주적 구성, 자율규제기구의 권한에 대한 감독, 언론·방송에 있어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율규제기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줌으로서 국가의 헌법적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물론 자율규제를 행할 때 단점들이 존재한다.¹¹⁾ 자율규제에 대한 국가의 간접적인 통제제도가 뒷받침되어야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Ⅲ. 미국에서 머그샷 제도에 대한 법적 문제

1. 공인에 대한 머그샷 촬영 및 공개

미국의 경우, 공인(Public figure) 이론과 공익의 확대 해석을 통해 법원에서 머그샷 공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고, 공개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이 클 경우 미성년자의 머그샷도 공개하기도 한다. 1998년 에드워드 드바톨로(Edward DeBartolo)가 연방 중범죄¹²⁾를 저질러 유죄 선고를 받았다고 뉴욕 타임즈는 드바톨로의 머그샷을 보도했다. 뉴욕 타임즈는 강 유람선 카지노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전 루이지애나 주지사 에드워드]가 뇌물 음모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다.¹³⁾ 뉴욕 타임즈는 독자들에게 드바톨로가 “썬텐하고(tanned), 은발이고, 주름이 없다.”고 기술했으나, 드바톨로의 머그샷을 그의 유죄 인정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지는

10) 김영중, 『부패학』, 승실대학교 출판부, 2001, 258면.

11) M. D. Cole, Der Dualismus von Selbstkontrolle und Aufsicht im Jugendmedienschutz, ZUM 2005, 464 f.

12) Times Picayune Publ'g Corp. v. U.S. Dep't of Justice, 37 F. Supp. 2d 472, 474 (E.D. La. 1999).

13) Kevin Sack, Owner of N.F.L. Team Ties Ex-Governor to Extortion, N.Y. TIMES, Oct. 7, 1998, at A12.

않았다.¹⁴⁾ 이는 미국 연방보안국이 드바톨로의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기를 거부했고, 연방대법원이 연방보안국의 입장을 지지했기 때문이다.¹⁵⁾

연방대법원이 관시한대로 드바톨로는 “샌프란시스코 Forty-Niners의 소유자인 유명한 사업가”이자 공인이었다.¹⁶⁾ 드바톨로의 미식 축구단은 그를 전국적인 인물로 주목받게 하였다. 드바톨로는 Forty-Niners의 13번 디비전 우승, 16번 플레이오프 입선, 10번 NFC championship game 입선, 그리고 5번 슈퍼볼 우승으로 미식 축구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¹⁷⁾ 그러나 에드워드 드바톨로 수사와 관련하여 그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을 때 그의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그의 사진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의 유죄 선고 직후, 연방보안국은 뉴올리언스 타임즈 피카유네(New Orleans Times Picayune) 기자들의 머그샷 복사 요청을 거부했다.¹⁸⁾ 연방보안국은 머그샷 사진에 대한 접근은 미국 연방정보자유법(FOIA)을 위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정보자유법(Federal 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은 정부 문서에 대한 공공의 접근을 보장하고 있지만, 일정한 문서에 대해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¹⁹⁾

미국 연방보안국은 드바톨로와 그의 머그샷 공개 금지는 미국 연방정보자유법(FOIA)상의 사생활 보호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드바톨로와 그의 머그샷은 정보 공개의 예외 사유인 사생활 보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정보자유법(FOIA)에 의하면 “집행법의 목적을 위해 수집된 기록이나 정보 공개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공개는 금지된다.”²⁰⁾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사는 이에 대해 드바톨로의 범행이 유죄라는 점과 그 소송 이후에 사진을 촬영했다는 점 등을 볼 때, 이러한 머그샷은 범집행을 위해 촬영된 것이 아니며 현재 범행사건 조사의 일환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드바톨로가 언론에 자주 얼굴이 등장하는 유명인사이라는 점에서 그의 머그샷은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²¹⁾ 더욱이, 신문사는 유명인의 범죄에 대한 궁금함과 그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가 경찰에 의해 구금되었는지에 대한 일반대중의 관심이 크다고 주장했다.²²⁾ 비록 머그샷을 촬영하는 것이 사생활 침해라 할지라도, 이러한 침해는 연방정보자유법(FOIA)에 의해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이는 유명인사(공인)의 제한적인 사생활 이익과 다양한 이유로 대중매

14) Kevin Sack, N.Y. TIMES, Oct. 7, 1998, at A12.

15) Times Picayune, 37 F. Supp. 2d at 474, 482.

16) Times Picayune, 37 F. Supp. 2d at 473.

17) Edward DeBartolo, Jr., PRO FOOTBALL HALL FAME, <https://www.profootballhof.com/players/edward-debartolo-jr/> (last visited Mar. 2, 2019).

18) Times Picayune, 37 F. Supp. 2d at 474.

19) 5 U.S.C. § 552 (2012).

20) 5 U.S.C. § 552(b)(7)(C); Times Picayune, 37 F. Supp. 2d at 474-75.

21) Times Picayune, 37 F. Supp. 2d at 474-75 (quoting 5 U.S.C. § 552(b)(7)(C)).

22) Id. at 479-80.

체에 공지할 실익이 있는 공인에 대한 관심사라는 중요한 공익 간에 비교형량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²³⁾

루이지애나 동부 지방법원은 각각의 논점에 관해 판결을 내렸다. 첫째, 법원은 드바톨로의 사진이 유죄판결을 받은 후 촬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보안국은 법집행의 목적을 위해 사전에 실제 사진을 찍었다고 판단했다. 연방보안국은 이러한 사진을 촬영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연방대법원은 연방보안국이 “연방범죄로 기소된 개인의 형사처벌을 통해 연방법 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수행할 목적”을 지녔다고 판단했다.²⁴⁾

둘째, 이전에도 드바톨로의 사진이 자주 신문에 보도되었지만, 법원은 법집행기관에 의해 구속된 상태에서 촬영한 이번 머그샷 촬영은 드바톨로의 이전 사진과는 달리 사생활 침해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판시했다.²⁵⁾

셋째, 연방정보자유법(FOIA)의 취지는 정부에 의해 체포된 유명인사의 정보를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 업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의 업무에 대해 시민들에게 계속적으로 정보를 주기 위한 것임을 설명하면서, 연방대법원은 그 사진에 대한 대중의 상당한 관심이 있다는 신문사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판결했다.²⁶⁾

넷째, 연방대법원은 드바톨로의 머그샷에 대한 이러한 공익은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에서 언론의 이익과 사생활 보호 이익 간의 실질적인 이익형량을 하지 않았다.²⁷⁾

연방대법원은 머그샷에 대해 대중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머그샷 공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어떠한지를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머그샷은 특정인의 사진 그 이상이다. 머그샷은 일반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시각적으로 그 사람의 악명을 높인다. 머그샷의 불쾌한 촬영상황 때문인지 또는 사용된 사진촬영장비 때문인지, 머그샷은 일반적으로 노골적인 얼굴 표정을 공개하게 된다. 이 사진에는 얼굴 전면과 측면 사진, 키 측정자가 보이는 배경, 피의자 얼굴 아래에 있는 연방보안국의 범죄자 식별 번호가 적힌 표지판이 있다.²⁸⁾

머그샷은 체포 이상으로 오랜 기간 지속효를 지니기 때문에 ‘낙인 효과’를 유발한다고 연방대법원은 판시했다.²⁹⁾ “머그샷은 독특하고 시각적으로 강력한 방법으로 보존된다.”면서

23) Id. at 481.

24) Id. at 475.

25) Id. at 477-78.

26) Id. at 479.

27) Id. at 482.

28) Id. at 477.

29) Id. at 477.

“그 주체는 후대에도 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남게 된다.”고 연방대법원은 설명했다.³⁰⁾ 따라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자신의 머그샷 공개를 반대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라는 것이다.³¹⁾

연방대법원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v. Reporters Committee for Freedom of the Press* 사건에서 머그샷 사진에 대한 액세스를 반대하며 사생활 보호를 지지하는 입장을 계수하였다. 이 사건은 10년 전 연방대법원이 개인과 관련된 사생활의 이익에 비추어 볼 때 이른바 특정인의 체포와 범죄를 기록한 전과 기록인 ‘랩시트’(rap sheets)를 기자들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보류할 수 있다고 판결한 사건이다.³²⁾ 연방대법원은 ‘랩시트’에는 생년월일과 신체특성뿐만 아니라 해당인의 체포, 혐의, 유죄판결, 투옥 이력 등 구속된 개인에 대한 특정 정보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³³⁾ 연방대법원은 랩시트에 기록된 정보를 정부 공무원들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리는 제3자의 범집행기록이나 시민에 대한 정보 요청이 그 시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것이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그 정보 요청이 정부기관에 대한 ‘공식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기록을 요구할 경우 그 시민에 대한 사생활 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본다.³⁴⁾

루이지애나 동부지방법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³⁵⁾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연방대법원은 개인의 생년월일과 체포정보를 포함하여 일단 공개된 정보에 대해 중요한 프라이버시 이익이 있음을 판시했다.³⁶⁾ 더욱이 루이지애나 동부지방법원은 이러한 머그샷에 대한 접근을 거부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음을 실시하면서, “머그샷은 대중 영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³⁷⁾ *Reporters Committee for Freedom of the Press*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뉴스의 가치가 있는 정보에 대해 중요한 프라이버시 이익이 있음을 판시했다. 연방대법원 사건에서 기자들은 의회가 연루되었을 수도 있고 조직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랩시트에 접근하기를 원했다.³⁸⁾ 루이지애나 동부지방법원이 판결을 내리자, 뉴스의 가치와 공익에도 불구하고 드바톨로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대법원은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그의 사진 공개를 금지한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했다.

랩시트와 드바톨로의 머그샷을 모두 요구했던 신문사는 법정에서 판결에 의해 어떠한 결

30) *Id.* at 477.

31) *Id.* at 477.

32) 489 U.S. 749, 749-50 (1989).

33) *Id.* at 752.

34) *Id.* at 780.

35) *Times Picayune*, 37 F. Supp. 2d at 477 n.3.

36) *Reporters Comm.*, 489 U.S. at 752, 762-65.

37) *Times Picayune*, 37 F. Supp. 2d at 477 n.3.

38) *Reporters Comm.*, 489 U.S. at 757.

과도 얻을 수 없었다. 연방정보자유법(FOIA)와 이와 유사한 주법령들은 언론이나 기타 누구이든 간에 누구에게나 정보 접근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미국 연방정보자유법(FOIA)에 의거하여 언론이 접근가능한 정보는 요청 사유와 무관하게 일반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이다.³⁹⁾ 그러나 드바틀로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은 머그샷과 관련하여 사생활 보호이익이 드바틀로에 대한 대중의 관심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1999년 이후 몇 년 동안, 머그샷에 대한 액세스와 관련된 사건을 판단할 때 대부분의 연방법원은 루이지애나 동부지방법원의 선례를 따랐고, 프라이버시의 이익은 범죄로 인해 체포된 사람의 사진을 보고자 하는 대중의 관심보다 크거나 우월한 실질적인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판결했다.

2. 머그샷 공개에 있어서 프라이버시와 공익 간의 형량

2018년 툴레인 대학교(Tulane University) 로스쿨에서는 언론인, 신문사 관계자, 언론 변호사, 언론학자들이 모여 ‘언론의 자유의 미래’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이 회의는 오늘날 뉴스 미디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고 때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미국 컬럼비아 지방 항소법원의 애브너 미크바(Abner Mikva) 판사는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하였다. 그는 인터넷상 뉴스위크(Newsweek)의 해인 1995년의 법률 검토 기사에서 언론들은 ‘조심하라!’고 기술했다. 이는 언론매체의 위법행위로 촉발된 수정헌법 제1조상 보호에 대한 반격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⁴⁰⁾ 미크바(Mikva) 판사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관들이 언론의 자유의 상징인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⁴¹⁾(New York Times Co. v. Sullivan) 사건에서 언론매체의 부정확하고 해로운 보도를 상당히 강력하게 보호했다고 주장했다.⁴²⁾ 미크바(Mikva) 판사는 언론매체의 보도의 부정확성과 관련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이 과도하게 언론을 보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⁴³⁾

언론의 남용에 대한 우려와 관련하여, 머그샷 공개 제한의 법원 판결이 증가하게 되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이익과 머그샷을 대중에 공개하는 언론매체의 이익 간 형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머그샷으로 그 중점이 옮겨지는 경향을 띠었다. 법원의 판사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더 보호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제6순회 항소법원(circuit) 판사들은 인터넷 언론매체들이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머그샷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39) Id. at 775.

40) Hon. Abner J. Mikva, In Ay Opinion, Those Are Not Facts, 11 GA. ST. U. L. REV. 291, 296 (1995).

41) 376 U.S. 254 (1964).

42) Mikva, 11 GA. ST. U. L. REV. 291, at 296-97, 301.

43) Mikva, 11 GA. ST. U. L. REV. 291, at 296-97.

미국에서 1980년대 방송 뉴스에서는 통상적으로 범죄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의 머그샷을 촬영하여 방송했다. 특히 그 사람이나 그의 범죄행위가 뉴스거리가 될 만한 가치가 있을 경우 머그샷이 방송되었다. 예를 들면, 체포된 사람이 시장인 경우 그의 머그샷은 범죄와 상관없이 뉴스거리가 될 수 있다. 또한 살인죄로 체포된 사람의 머그샷은 그 범죄의 극악성 때문에 사회에서 그의 지위와 상관없이 뉴스거리가 되기 때문에 머그샷을 공개하게 된다. 이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그 정보 공개에 대한 공익을 형량하여 머그샷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사전에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연방헌법상 피의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직 유죄판결을 받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중에 공개하는 것은 심각한 인격권 침해임이 분명하다. 국민의 알 권리는 범죄가 증명되었을 때 시행되어도 늦지 않다. 법원이 방송 등 대중매체의 뉴스를 인정하고 그 보도나 방송을 신뢰하게 되면, 법원은 기자들에게 법적 의미에서 뉴스의 가치가 있는 것을 공익으로 간주하게 된다. 대중에게 공적인 관심되는 것은 뉴스이다.⁴⁴⁾ 최근 미국 뉴욕 주는 머그샷 공개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뉴욕 시민들의 찬반 여론이 갈리는 추세다.⁴⁵⁾

3. 머그샷 공개 여부와 뉴스의 가치

1984년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Sipple v. Chronicle Publishing Co.* 사건을 판결했다.⁴⁶⁾ 그 사건에서 암살 시도로부터 제럴드 포드 대통령을 구한 한 남자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신문에 의해 동성애자로 보도되었고, 그 남자는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신문을 고소했다.⁴⁷⁾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뉴스에 대한 크로니클 신문의 기사를 지지했다. “그 신문 기사는 항소인의 사생활을 병적이고 선정적으로 보도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정치적 고려에 기인한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신문사가 “동성애자들이 소심하고 약하고 비영적인 사람들이라는 잘못된 여론을 없애고 미국 대통령이 동성애자 같은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적 태도나 편견을 가졌는지 상관없이 중요한 정치적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기사를 썼다고 항소법원은 판시했다.⁴⁸⁾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그 자료가 뉴스의 가치가 있고 공익을 위해 제작되었다는 기자들의 주장을 지지했다. 여러 해 동안 법원들은 언론인들이 뉴스의 가치가 있는 것과 뉴스의 가치가 없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⁴⁹⁾ 1996년 제6순회 항

44) RESTATEMENT (SECOND) OF TORTS § 652D cmt. g (AM. LAW INST. 1976).

45) <https://news.ajoins.com/article/23578884> 중앙일보 2019년 9월 17일

46) 201 Cal. Rptr. 665 (Ct. App. 1984).

47) Id. at 666-667.

48) Id. at 670.

49) Amy Gajda, *Judging Journalism: The Turn Toward Privacy and Judicial Regulation of the Press*, 97 CALIF. L. REV. 1039 (2009).

소법원(circuit) 머그샷 판결에서 보듯이, 법원들은 뉴스 매체가 많은 양의 민감한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왜냐하면, 법원들은 뉴스의 가치가 있는 정보를 선별하는 뉴스 매체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후 인터넷과 출판물 영역에 사회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사건들이 발생했다. 법원들은 뉴스 매체에 의해 뉴스의 가치가 있는 보도인지 여부 이외에 공익적 차원에서 뉴스가 기여하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2009년 미국 제11순회 항소법원은 허슬러(Hustler) 사가 남편에 의해 살해된 프로 레슬링 선수인 낸시 베누이트(Nancy Benoit)의 20년 전(前) 누드 사진 보도에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⁵⁰⁾ 베누이트(Benoit)의 가족은 법정에서 ‘간단한 인물 작품’⁵¹⁾이라는 제목의 그녀의 뉴스에 수반된 누드 사진 보도에 반대했고, 신문사의 사진 편집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그녀의 사생활을 보호해 주기 위해 출판권 소송을 제기했다.⁵²⁾ 항소법원은 그녀의 가족의 입장을 지지했다. 항소법원은 “베누이트가 허슬러 사에 직접 자신의 누드 사진 공개를 허락했어야 했다. 뉴스의 가치가 없다면 뉴스 기사와 보도와 관련이 없으므로 출판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베누이트(Benoit)의 나체 사진은 그 자체로서 뉴스의 가치가 없다.”고 판시했다.⁵³⁾ 허슬러 사는 누드 사진과 거의 관계가 없는 베누이트(Benoit)의 살인에 대한 짧은 기사만을 출판했기 때문에, 그 누드 사진은 “뉴스를 공개하는 합법적인 목적에 기여하지도 않으며 대중에게 불필요하게 원고들의 사생활을 노출시키는 것이다.”라고 판시했다.⁵⁴⁾ 항소법원은 “사람들의 일상 누드 사진은 언론이 일반적으로 보도할 가치가 없다”라고 판시하였다.⁵⁵⁾ 따라서 한 여성의 살인에 관한 기사는 그녀의 누드 사진을 뉴스의 가치가 있게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⁵⁶⁾

2015년 미국 제7순회 항소법원은 범죄 취재와 관련하여 *Dahlstrom v. Sun-Times Media, L.L.C.* 사건을 판결했다.⁵⁷⁾ 시카고 선타임즈는 폴리스 라인에 관한 뉴스 기사를 발표했다. 기자들은 용의자인 시카고 시장의 조카를 보호하기 위해 폴리스 라인을 인위적으로 조작했다고 보도했다.⁵⁸⁾ 문제가 된 폭행사건의 목격자들은 가해자를 자신들이 본 사람 중 가장 키가 큰 사람으로 묘사했지만, 폴리스 라인에 선 용의자들은 비슷한 체격과 얼굴색, 머리색, 전체적으로 비슷한 외모를 갖추었고 경찰관 5명도 포함되어 있었다.⁵⁹⁾ 시카고 선타임즈는 ‘데일리 시장의 조카는 키가 가장 큰 인물, 그러나 폴리스 라인에는 없다’라는 기사

50) *Toffoloni v. LFB Publ'g Grp., L.L.C.*, 572 F.3d 1201, 1201-02, 1204 (11th Cir. 2009).

51) *Id.* at 1209.

52) *Id.* at 1204.

53) *Id.* at 1209.

54) *Id.* (quoting *McCabe v. Vill. Voice, Inc.*, 550 F. Supp. 525, 530 (E.D. Pa. 1982)).

55) *Id.*

56) *Id.* at 1210.

57) 777 F.3d 937, 940 (7th Cir. 2015).

58) *Id.*

59) *Id.*

의 헤드라인으로 보도했다.⁶⁰⁾ 또한 실제 목격자들은 폴리스 라인에 선 사람들 중에서 목격한 남자(조카)를 찾을 수 없었다.⁶¹⁾ 폴리스 라인에 선 경찰관 ‘필러’(filler)가 용의자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기자들은 주 운전면허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경찰관들의 신체적인 정보를 입수했다.⁶²⁾ 이 데이터에는 경찰관들의 생년월일, 키, 몸무게, 머리색, 눈색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⁶³⁾ 경찰관들은 자신들의 정보를 입수하고 게재한 것에 대해 신문사를 고소했고, 제7순회 항소법원은 경찰관들의 소송 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⁶⁴⁾

항소법원은 신문사가 운전면허 정보를 비밀리에 입수함으로써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시했다.⁶⁵⁾ 항소법원은 “운전면허 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 제한을 한 것은 합리적으로 범죄자가 주(州) DMV(Department of Motor Vehicles)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정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은 합리적 심사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고 판시했다.⁶⁶⁾ 불법적으로 취득한 뉴스의 가치가 있는 정보를 게재할 수 있다는 시카고 선타임스 사의 주장에 대해 항소법원은 그러한 권리가 없었다고 판시하였다. 시카고 선타임스 사가 주장한 것은 많은 판례들에 있어서 언론의 민감한 정보 획득은 ‘합법적인’ 경우를 전제로 함에 있다.⁶⁷⁾ 시카고 선타임스 사가 진실된 정보를 수집하고 공개하는 과정에서 지극히 전통적인 저널리즘에만 관여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법원은 진실된 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했다는 사실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⁶⁸⁾

또한, 제7순회 항소법원은 선타임스 사가 주 운전면허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얻은 정보는 뉴스의 가치가 있는 기사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신문사를 상대로 한 사생활에 대한 소송은 계속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⁶⁹⁾ “우리는 언론인들이 불법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수정헌법 제1조는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들을 공표할 권리를 언론인들에게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판시했다.”⁷⁰⁾

2015년 *Pennsylvania, Hartzell v. Cummings*의 하급법원 판결이 있었다.⁷¹⁾ 이 판결에서 범죄와 관련된 출판물과 정보에 대한 뉴스의 가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이익을 능가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하르첼(Hartzell)은 2개의 비언론 웹사이트에 한 남자의 범죄 이력을 공개했

60) Id.

61) Id.

62) Id. at 940-941.

63) Id. at 939.

64) Id. at 940.

65) Id. at 949-950.

66) Id. at 949 (quoting *Maracich v. Spears*, 133 S. Ct. 2191, 2198 (2013)).

67) Id. at 950.

68) Id. at 951.

69) *Dahlstrom*, 777 F.3d at 954.

70) Id.

71) No. 150103764, 2015 WL 7301962 (Pa. Ct. C.P. Nov. 4, 2015).

고, 주지방법원은 인터넷상 웹사이트에서 이러한 내용을 내리고, 비활성화하고, 삭제하라고 명령했다.⁷²⁾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변호인 측의 주장에 대해 주지방법원은 원고의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만 삭제하라고 명령했다.⁷³⁾ 미국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는 모든 형태의 표현을 포함하지 않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포함한 다른 권익과 이익형량을 해야 한다고 판시해왔다.⁷⁴⁾ 여기서 범죄 이력은 공적인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안전이 문제였다.⁷⁵⁾ 주지방법원은 “원고인의 과거 이력은 25년 후 뉴스의 가치가 없을 것”이라고 기술했다.⁷⁶⁾

대니얼 솔로브(Daniel J. Solove) 교수는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에는 너무 복잡하여 하나의 본질로 축약할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생활의 자유 침해에는 다양한 유형의 유해하거나 문제있는 활동이 포함되게 된다.”고 주장한다.⁷⁷⁾ 핵심은 사회가 가치있는 활동을 방해하는 문제에 대한 보호로서 프라이버시를 설계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류 체계에 의하면, (1) 정보 수집, (2) 정보 처리, (3) 정보 보급, (4) 정보 침해와 같은 사생활에 유해한 활동의 네 가지 범주를 설명하고 있다.⁷⁸⁾ 이러한 4가지 분류는 각각 개인정보 보호에 해로운 특정 범주를 다룬다. 예를 들어 ‘공개’는 정보 수집 및 공개의 범주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침해 중 하나이다.⁷⁹⁾ 개인정보 보호의 맥락에서 ‘공개’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성격을 판단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사람에 대한 진정한 또는 부진정한 정보 공개에 해당된다.⁸⁰⁾

IV. 결론: 우리에의 시사점

1. 언론매체에 의한 부정확하고 무책임한 머그샷 공개는 공인이나 피의자의 사생활 침해를 유발한다. 언론매체에 의한 머그샷 공개는 문화현상으로서의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언론매체의 사회적 부패 방지를 위해서는 반부패기구나 감사기관의 통제 시스템에 의해서가 아니라, 언론매체 자체의 자율규제가 작동해야 한다. 언론매체에 의해 유발되는 사회적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언론·방송에 대한 자정을 위한 독립된 자율적 감독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언론의 공정성을 위한 자율규제는 국가기관에 의한 타율규제 형식이 아닌,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입법할 필요성이 있다.

72) Id. at *1.

73) Id.

74) Id. at *3.

75) Id.

76) Id. at *4.

77) Daniel J. Solove, A Taxonomy of Privacy, 154 U. PA. L. REV. 477, 480 (2006).

78) Daniel J. Solove, A Taxonomy of Privacy, at 488.

79) Daniel J. Solove, A Taxonomy of Privacy, at 523.

80) Daniel J. Solove, A Taxonomy of Privacy, at 491.

2. 미국에서 머그샷 제도는 공인(Public figure) 이론과 공익(公益)의 확대 해석을 통해 법원에서 머그샷 공개 여부를 결정 내리게 되었다. 머그샷 공개와 관련하여 대중매체의 부정확한 보도를 미국 연방대법원은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미국 법원들의 판례를 살펴보면, 뉴스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로 머그샷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3. 우리나라 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식별용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진을 공개하지는 않는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⁸¹⁾에서 정하고 있는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규정에 의거하여 머그샷을 추진하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 공표죄’⁸²⁾가 있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사람은 형사처벌 받는다. 따라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머그샷 제도 도입은 우리 법체계 안에서 신중한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4. 헌법재판소는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을 비롯하여 일반적으로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촬영허용행위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초상권을 포함한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⁸³⁾ 이 사건에서 경찰관이 보도자료 배포 직후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정○○(청구인)이 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촬영허용행위’)는 피의자가 얼굴이 공개되어 초상권을 비롯한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받았고, 촬영한 것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범인으로서의 낙인 효과와 그 파급효과 매우 가혹하여 법익균형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촬영허용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하였다.⁸⁴⁾ 이렇듯 머그샷의 촬영행위와 공개는 인격권에 대한 침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

8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2)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83) 헌재 2014. 3. 27. 2012헌마652, 판례집 26-1상, 534.

84) 헌재 2014. 3. 27. 2012헌마652, 판례집 26-1상, 534, 535.

참고문헌

- 박규환,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허용범위 확정에 관한 기본권 이론적 연구 - 인격권(명예훼손)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제34집 4권 2호, 2006. 6.
- 배성호, “민법에 있어 인격권 보호 서설 - 인격권 개념의 정립과 전개 -, 『한국부패학회보』 제13권 제3호, 2008. 9.
- 이부하, “방송매체에서 인격권 침해에 대한 헌법적 보호”, 『홍익법학』 제19권 제3호, 2018. 9.
- 이부하, “일반적 인격권의 헌법적 보장”, 『공법학연구』 제17권 제2호, 2016. 5
- 조재현, “표현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고찰”, 『공법학연구』 제20권 제4호, 2019. 11.
- Sebastian Bergau, Die Vermeidung von Persönlichkeitsrechtsverletzungen bei Spielfilmen über reale Geschehnisse, ZUM 2016, S. 812 ff.
- Amy Gajda, Judging Journalism: The Turn Toward Privacy and Judicial Regulation of the Press, 97 CALIF. L. REV. 1039 (2009).
- Hon. Abner J. Mikva, In Ay Opinion, Those Are Not Facts, 11 GA. ST. U. L. REv. 291 (1995).
- Kevin Sack, Owner of NFL Team Ties Ex-Governor to Extortion, N.Y. TIMES, Oct. 7, 1998, at A12.
- Daniel J. Solove, A Taxonomy of Privacy, 154 U. PA. L. REV. 477 (2006).

투고일자 : 2020. 12. 07.

수정일자 : 2020. 12. 16.

게재일자 : 2020. 12. 28.

<국문초록>

사회적 부패방지를 위한 머그샷 제도와 대중 매체에서 인격권 보호

이 부 하

머그샷(Mugshot) 제도는 구속된 피의자의 사진 촬영·공개하는 제도이다. 미국에서 머그샷 제도는 공인(Public figure) 이론과 공익의 확대 해석을 통해 법원이 머그샷 공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여러 사건에서 머그샷 사진에 대한 액세스를 반대하면서 사생활 보호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했다. 머그샷 공개와 관련하여 범죄자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그 정보 공개에 대한 공익 간 형량을 통해 머그샷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과정을 생략한다.

머그샷 공개와 관련하여, 대중매체의 부정확한 보도를 미국 연방대법원은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미국 법원들의 판례를 살펴보면, 뉴스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로 머그샷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특정한 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식별용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진을 공개하지는 않는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규정에 의거하여 머그샷을 추진하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어서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경우, 그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는 공판청구 전에 그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 어렵다.

머그샷 공개 등 언론매체에 의해 유발되는 사회적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언론·방송에 대한 자정을 위한 독립된 자율적 감독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언론의 공정성을 위한 자율규제는 국가기관에 의한 자율규제 형식이 아닌,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입법할 필요성이 있다.

주제어: 머그샷, 인격권, 공인, 언론의 자유, 뉴스의 가치